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수신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과 그 대리인
(경유)

제목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프수입에 따른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위한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안내

1. 관련: 무역위원회공고 제2026-7호(2026. 4. 7.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2.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2026. 6. 15.(월)까지 참석 신청서 및 발언요지(공개본, 비공개본)를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장소 : 2026. 7. 2.(목) 14:00 ~ 15:30 / 무역위원회 심결정실(정부세종청사 11동 4층)
※ 참석자 수에 따라 장소는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참석 대상 :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신청인 및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과 그 대리인
- 회의 내용 : 국내산업피해 조사 관련 이해관계인 주장 청취 및 토의
- 사전 제출 : 가. 참석 신청서(붙임2 양식)
나. 발언요지(별도 서식 없으며, A4 종방향으로 자유기술-공개본, 비공개본) 각 1부
다. 발언요지 요약문(붙임1의 부록 I 양식)

※ 조사의 진행상황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회의 개최 안내 1부.
2. 참석 신청서(양식) 1부. 끝.

-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관련 -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위한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안내

□ 회의 개요

- (목적)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국내산업피해 조사 관련하여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제공
 - (일시) 2026. 7. 2.(목) 14:00~15:30
 - (장소) 정부세종청사 (11동 4층 무역위원회 심결정실)
 - (참석범위)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장(회의주재), 조사관, 신청인,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과 그 대리인
- * 이해관계인 회의 참석은 선택사항이며, 답변서나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더라도 참석 의무는 없음.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해당 당사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조사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됨

시 간	진행순서	발언자
14:00 ~ 14:02 (2분)	인사말	회의주재자
14:02 ~ 14:05 (3분)	조사경과 및 향후일정 설명	담당조사관
14:05 ~ 15:00 (55분)	신청인 및 피신청인 발언	신청인, 피신청인(또는 대리인) 등
15:00 ~ 15:27 (27분)	그 외 이해관계인 발언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15:27 ~ 15:30 (3분)	맺음말	회의주재자

※ 참석자 수에 따라 회의 진행(진행순서, 시간 등)과 장소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공지함)

이해관계인 회의 진행 절차

- 회의 참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참석신청서, 발언요지, 요약문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이해관계인은 필요 시 상대방의 발언요지(공개본)를 무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공함. 또한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회의 시 회의 참석자들에게 발언요지 공개본 책자를 제공할 예정
 - 이해관계인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제출한 발언요지에 없는 내용의 경우,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서면(비공개본 1부, 공개본 1부)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조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음
-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안내 사항

- (자료의 제출)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26. 6. 15.(월)까지 제출해야 함

① 참석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성명·소속·직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명기
- 장소 여건 상 사업체별 참여 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함
- * 참석 희망자 3인 초과 시 담당조사관과 사전 협의 필요

② 발언요지

- 주장 및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발언문을 제출해야 하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정확하고 충분한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함
- 발언요지는 전자문서(hwp, 엑셀파일 등)로 제출하되, <붙임>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 발언요지에 영업비밀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본>과 <공개본>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고, 발언요지 상 모든 정보가 공개가능한 경우 “본 발언요지 상 모든 정보가 공개 가능함”을 **발언요지 첫 장 상단에 명시**해야 함(공개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료 접수 불가)

③ 발언요지 요약문

- ② 발언요지의 핵심 내용을 부록 I 양식에 따라 1쪽 이내로 작성

- (자료제공 요청) 다른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국내산업피해조사 답변서(공개본) 및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공개본)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26. 6. 25(목)까지 공문으로 요청

* 법령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7항

** 공문에 요청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 자료 제공 가능

□ 문의 및 자료제출

- 산업피해조사과 신여름 조사관(044-203-5863, bludawn@korea.kr)

1. 서면의견서(발언요지)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각종 통계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가급적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를 적고 “추정”이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원자료의 출처, 산출근거 기재 필수)
 3. 제출하신 자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xxx”, “**영업상 비밀자료**” 등으로 표시하여 **공개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비공개 처리한 항목에 대해서는 **부록Ⅱ의 양식**에 따라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 사유**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의견서(발언요지) 비공개본의 표지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요망
- 본 의견서 및 첨부자료에는 본인의 제조원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거래처의 명칭·주소 및 거래량,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료제출자는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이 없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답변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 양식은 **부록 Ⅲ**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부록 I. 발언요지 요약문

회사명		
주소		
담당자 (참석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	(E-mail)
제출일		

주장 1 :

○ (근거)

-

-

주장 2 :

○ (근거)

-

-

※ 첨부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부록 Ⅱ.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 사유

* 비공개정보 구분 <관세법 시행규칙 제 15조>

- ① 제조원가
- ②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 ③ 거래처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예시)

페이지	비밀취급 요청정보	법적 근거	비공개 사유
1	동종물품 매출액	⑤	※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유
1, 28	조사대상물품 수입실적	⑤	
6	조사대상물품과의 품질비교 검사 결과	⑤	
3, 5, 16	생산량 및 생산능력	②	
...	판매 및 재고	②	
...	가동률		
...	판매가격	②	
...	단위당 제조원가	①	
...	판매비와 관리비	②	
...	영업이익	②	
...	거래처 및 거래내역	③	
...	현금흐름		
...	고용		
...	임금		
...	[첨부 1]		
...		

※ 상기 열거된 비밀취급 요청 목록은 예시이므로, 추가할 목록이 있으면 추가하여 작성

부록 Ⅲ. 자료의 정확성 입증

제공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작 성 자 : 직위 성명 서명(인)

(대리인 정보)

회 사 명 :

작 성 자 : 직위 성명 서명(인)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관련
국내산업피해 조사를 위한 이해관계인 회의 참석 신청서

- 일시/장소 : 2026. 7. 2.(목) 14:00-15:30 / 무역위원회 심결정실
- 참석대상 : 신청인,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과 그 대리인

소속 (회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발언요지 발표자 ○표시)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장소 여건 상 사업체별 참석자 수는 3인 이내로 제한합니다.